

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규칙안은 2022년 10월 20일 김광성 의원이 발의하고, 2022년 11월 03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1. 제안이유

「평창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(배부·보고 및 회부)제2항과 제57조(의안 등의 상정시기)제1항 각 호의 규정이 상호충돌함에 따라 지속적인 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여, 규칙의 일부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배부·보고 및 회부’ 규정 수정(안 제23조)
- 나. ‘의안 등의 상정시기’ 규정 삭제(안 제57조)
- 다. ‘의안 등의 상정시기’ 규정 신설(안 제23조의2)

3. 검토의견

○ 본 규칙 개정안은

규정 간의 내용적 상호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회의 운영 시

지속적인 회의 규칙 위반이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의안의 회부 또는 상정 주체를 기존 “위원회 또는 위원장” 에서 “의장” 으로 변경하여 적법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

일부 의안 상정시기를 앞당겨 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회의 준비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.

○ 검토결과,

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참고자료: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